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86

발의연월일: 2020. 7. 22.

발 의 자:이형석·박 정·진성준

신정훈 · 고영인 · 허 영

이용빈 · 양기대 · 김영주

임호선 · 서영교 · 한병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정의하고 있으며, 판례에서는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고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이 법상의 "도로"로 인정하는 반면, 차단기를 설치하여 자율적으로 관리되는 단지 내 도로는 이 법상의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조건의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를 차단기 설치 유무로 "도로"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차단기를 설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교통안전에 불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모든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를 이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 하고,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주체 또는 관리자가 시장 또는 지방경찰청 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과 횡단보도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단지 안의 도로 제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도로의 경우에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1.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 해당 도로의 관리자
-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단지 안의 도로: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주체 또는 관리자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단지 안의 도로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주체 또는 관리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횡단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곳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신 설> 따른 공동주택의 단지 안 의 도로 라. (생 략) 마. (현행 라목과 같음) 2. ~ 33. (생략) 2. ~ 33. (현행과 같음)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 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 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 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 (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 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다만, 다음 각 호의 도로의 경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우에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 | 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 ⑤ (생 략)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 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 부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⑤ (생 략)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교통안 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1.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 른 유료도로: 해당 도로의 관 리자
-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 른 공동주택의 단지 안의 도 로: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사 업주체 또는 관리자
- ② ~ ⑤ (현행과 같음)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단지 안의 도 로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주체 또는 관리자가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횡단보도를 설치하여야 한 다.

② ~ ⑤ (현행과 같음)